

[신통일한국 기금운용 및 관리 규정]

제정 : 2024. 4.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천일국 11년 '세가한본 제56호(총무-35)'에 의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협회"라 한다)의 '신통일한국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통일한국 기금운용 및 관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명칭 및 용어의 정의)

'신통일한국 기금운용 및 관리' 명칭은 "기금"이라 하며, 신통일한국 안착, 비전2025 승리를 향한 전도기반 마련, 남북통일에 관한 국민적 기대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2장 기금개요

제4조(기금의 구성)

기금은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기금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자원)

기금의 자원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의 승인 하에 지원한다.

제6조(기금의 적립)

- 기금의 적립은 신통일한국 기금회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기금은 협회의 교회지원 정책에 근거하여 기금통장으로 일괄 지급한다.

제7조(기금의 사용)

- 기금은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기금의 이자수입 또한 해당 기금의 사용목적과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변경)

- ① 적립된 기금은 용도 변경할 수 없다.
- ② 다만, 변경사용에 대한 사항은 협회 심의 및 협회장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기금운용 및 관리

제9조(독립계정)

- ① 기금은 교회 일반회계와 구분하며, 특별계정으로 관리한다.
- ② 기금통장은 반드시 교회 명의로 별도로 개설하고 운용한다.
- ③ 단, 교회 명이가 불가능한 경우 협회의 심의를 거쳐 목회자 및 목회자 가족을 제외한 기금운영관리책임자의 명의로 개설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 사용)

- ① 기금은 세가한본 제56호(총무-35)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 ② 기금 사용에 대한 협회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기금은 협회의 별도 지침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수반되는 경비(홍보비, 각종 수수료, 기타운영비 등)는 해당 용도로 인정한다.
- ④ 교회 당회장은 기금 사용에 관해 제직회와 반드시 협의한다.

제11조(기금운용과 관리 계획 수립)

- ①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관리를 위해 매 연초에 회계연도의 운용 가능 자금규모를 추정하고, 연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용목표
 2. 운용 현황분석 및 전략
 3. 운용 계획
- ② 전항의 연간기금운용계획은 협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③ 섭리적 환경변화 및 자금 수급의 급변으로 인하여 연간기금운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과 관리 원칙)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용과 관리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1. 투명성: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용 관리한다.
2. 공정성: 공정하게 운용 관리한다.
3. 책임성: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운용 관리한다.
4. 안정성: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도록 운용 관리한다.

제13조(기금운용과 관리 체계)

기금 운용과 관리의 조직체계는 기금감독 및 의사결정기관(협회), 기금운용과 관리(당회장, 책임자)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주체 및 역할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용관리책임자)

- ① 기금운용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 ② 당회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교회 식구 중에서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 책임자를 임명한다.
- ③ 책임자는 교회 효정봉헌서 담당자로 하며, 목회자 및 목회자 가족은 책임자가 될 수 없다.
- ④ 책임자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용 관리 지출한다.
- ⑤ 기금 운용 및 관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수령 및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과 관리 보고)

- ① 책임자는 매년 협회가 정한 날에, 기금운용과 관리 내역 및 결산을 협회에 보고한다.

제16조(기금운용과 관리 장부)

- ① 책임자는 '기금운용과 관리장부'(이하 "장부"라 한다)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보관 정리한다.
- ② 장부와 영수증 보관 기간은 5년이다.

제17조(의무 및 면책)

- ① 당회장 및 책임자는 기금 운용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금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다.
 2.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기금을 집행한다.

- 3.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지 않는다.
- 3.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② 당회장 및 책임자는 기금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8조(기금운용관리 감독 및 감사)

- ① 협회는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 ② 협회는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및 관리한다.
- ③ 협회는 기금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과실이 드러날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신분상 처분(주의, 경고, 징계), 행정상 처분(개선, 통보, 주의, 경고, 시정), 재정상 처분(변상명령, 추징, 회수) 등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해체)

기금을 해체 하려할 때에는 협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의 심의를 통해 시행한다.

부칙(2024.4.1.)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